

#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102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27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을 ‘인사청문대상자의 소속 기관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’에서 실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, 후보자 검증의 전문성과 해당 기관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 변경 (안 제4조)  
(현 행) 의회운영위원회  
(개정안) 인사청문대상자 소속 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현행조례 : 붙임 3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※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’ 생략

7. 관련 법령 : 붙임 4

8. 참고자료 : 붙임 5

## **【붙임 1】 개정조례안**

### **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” 를 “그 소속 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 전문위원” 을 “해당 위원회 전문위원” 으로 한다.

#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【붙임 2】**

**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인사청문 실시 위원회) ①           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 <u>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</u>(이하            “위원회” 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 <u>위원회 전문위원</u> 및 직원이 수행            한다.</p>	<p>제4조(인사청문 실시 위원회) ①            -----  <u>그 소속 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           상임위원회</u>-----.</p> <p>② -----  <u>해당 위원회 전문위원</u>-----            --.</p>